

「충남 자동차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충남 자동차부품 제조산업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충남 자동차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8일

(재)충남테크노파크 원장

I. 사업목적 및 지원대상

① **사업목적** : 충남지역 자동차 업종의 원·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

② **지원대상** : 하단 조건을 충족하는 **충남** 소재 기업 및 재직근로자

1. 사업대상 : 충남에 소재한 5~500인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**자동차부품제조업(C30)**
및 **상생협력 협약기업(현대·기아차) 부품협력사(산업분류코드 무관)**

-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, 현대·기아차 협력사 증빙서류(SQ인증서 등)

- 사업장 소재지는 주된 사업장, 기업부설연구소, 공장, 지점 소재지 등 포함

2. 기업규모 : 정규직 채용일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
이상 5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

- 신청근로자가 다수일 경우, 정규직 채용일(또는 전환일)이 가장 빠른 자의 정규직
채용일(또는 전환일)이 속한 달의 직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함

3. 지원대상

가. 기업 도약 장려금

- 2024.4.25.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(또는 전환)한 기업에
장려금 지원

※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자를 '24.4.25.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도
신청 가능 (※ 전환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)

나. 일자리 채용 지원금

- 2024.4.25.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취업(또는 전환) 후 3개월
이상 근속한 근로자(개인)에게 지원금 지원

※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후 '24.4.25.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도
신청 가능 (※ 전환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)

4. 소재지 조건 : 충남 소재 기업 및 재직근로자

- ※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, 사업 신청일 이후 3개월까지 충남에 전입 후 참여 가능
- ※ 근로자는 사업기간 동안 충청남도 거주 필수

5. 연령 조건 : 만 35세 이상 59세 이하(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 기준)

- ※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상향
(예, 의무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7세 이상 59세 이하)

6. 근로 및 재직요건: 아래 가~다.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- 가.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
- 나.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인 자
- 다. 정규직 채용(또는 전환) 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자

【 최저임금 120% 기준 (2025년) 】

- 2025년 최저시급 10,030원
- 공제 전 (시급) 12,036원, (일급) 96,288원, (월급) 2,515,524원(주 40시간 기준)
- ※ 기본급, 기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
- ※ 초과근무수당 등은 제외

③ 지원 제외자 :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기업

가. 근로자 기준

- ①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*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
* 예)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일자리 채용 지원금 등
- ②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의 유사한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
* 예) 고용창출장려금, (지역)고용촉진장려금,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
- 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(신청일 기준)
- 다만, 휴업이나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은 가능
- ④ 근로자 파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근로자
- ⑤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, 증손자녀 등) 관계에 있는 자
- ⑥ 동일 기업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
- ⑦ 취업기업의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및 재택근무자
- ⑧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된 자
- ⑨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(고등학교나 대학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 등)
- 고등학교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
- 방통대 · 사이버대 · 학점은행제 · 야간대학 · 대학원은 재학 중에도 참여 가능

- ⑩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 중 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퇴사한 자
 - 다만, 사업장 폐업 또는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가 타 선정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참여자 재선정 및 잔여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(이 경우 실제 취업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산정)
- ⑪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
- ⑫ 이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상자

나. 기업 기준

- ① 국가 및 지자체와 그 출자·출연기관, 공공기관 등
- ② 근로자과견업, 인력공급업, 경비 경호업, 시설 관리 서비스업 및 소비·향락업 등의 업종 기업
- ③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이직한 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기업
- ④ 국외법인 또는 다른 지역 소재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재택근무자로 채용한 기업
- ⑤ 감원방지기간(채용 후 12개월)에 인위적인 감원한 기업
 - 감원방지기간에 지원 대상자를 경영상 해고, 고용조정 등 인위적으로 감원한 기업에는 감원 발생 다음 날부터 동 사업* 지원은 일할계산 없이 모두 중단
 - * 대상 사업: 기업도약장려금, 일자리 채용 지원금, 근로환경 개선지원
 - 지원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해당자에 대한 지원만 중단
- ⑥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 되는 기업(사업주)

4 사업기간 : 공고일 ~ 2025.12.31.

※ 세부 지원사업별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할 것

II. 지원내용 및 절차

* 지원 내용 (※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)

구 분	세부 내용	지원금	인원
기업 도약 장려금	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100만원(또는 60만원) 최대 6개월 지원 - 최저임금 120% 이상 : 100만원 × 6개월 (최대 600만원 지원) - 최저임금 120% 미만 : 60만원 × 6개월 (최대 360만원 지원) ※ 공고일 이후 최소 고용유지(근속) 기간 3개월 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 ※ 월 단위로 지원하며, 지원 도중 자발적 이직의 경우 잔여 일수는 부지급	최대 360~600만원 (60~100만원×6회)	25명
일자리 채용 지원금	3개월,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원	최대 200만원 (100만원×2회)	
근로환경 개선	재직자 복리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	최대 500만원	10개社
공통 참여	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및 교류회 지원 사업참여, 기업탐방 등	-	-

① 기업 도약 장려금 : 총 25명

1. 지원내용 - 참여기업 신규 채용근로자 고용유지 장려금 지원

○ 지원규모: 기업별 2명 한도

○ 지원기간: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대 6개월간 지원

- 지원 대상은 자동차 업종 상생협약일인 2024.4.25. 이후 채용된 자이고,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산일은 2025년 사업공고일부턴으로 하며, 기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 및 지급 가능

예시1) 2024.10.1. 채용한 경우: **사업공고일 (2025.3.18.)**부터 근속기간 산정

예시2) 2025.3.18. 이후 채용한 경우: 채용일부턴 근속기간 산정

○ 지원수준: 정규직 취업(또는 전환) 후 기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고용유지 기간 1개월당 100만원(또는 60만원)씩 1인당 최대 600만원(또는 360만원) 지급 (일할계산 없이 월 단위로 지급)

① 최저임금 120% 이상인 경우 : 월 100만원 지원

② 최저임금 ~ 최저임금 120% 미만인 경우 : 월 60만원 지원

※ 공고일 이후 최소 고용유지(근속) 기간 3개월 고용유지 요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

※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원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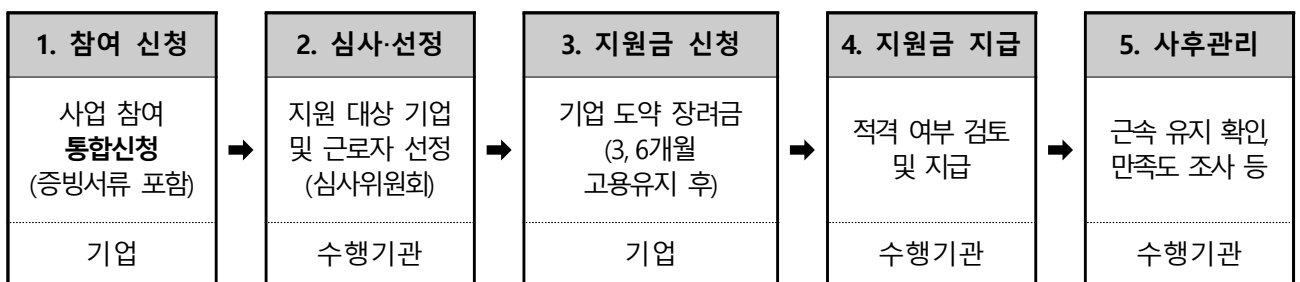
※ 월 단위로 지원하며, 지원 도중 자발적 이직의 경우 잔여 일수는 부지급

2. 지원절차

○ 신청기한: 2025.3.31.(월)

○ 지원절차: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원

【 사업추진 프로세스 】



※ 최초 기업/근로자 선정 후(1~2), 사업운영 반복(3~5)

② 일자리 채용 지원금 : 총 25명

1. 지원내용 - 기업 도약 장려금 선정 근로자 근속유지 지원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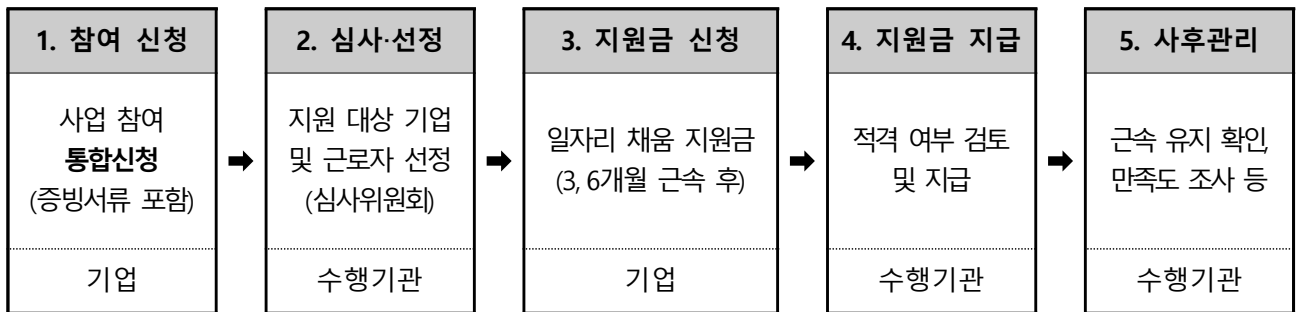
○ 지원규모: 기업별 2명 한도(기업 도약 장려금 선정자와 동일)

- 지원기간: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간 지원
 - 지원대상은 자동차 상생협약일인 2024.4.25. 이후 채용된 자이고,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산일은 2025년 사업공고일부턴으로 하며, 기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신청 및 지급 가능
 - 예시1) 2024.10.1. 취업한 경우: **사업공고일(2025.3.18.)**부터 근속기간 산정
 - 예시2) 2025.3.18. 이후 취업한 경우: 채용일부턴 근속기간 산정
 - 지원수준: 정규직 취업(또는 전환) 후 기산일로부터 3,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급
(일할계산 없이 총 2회 지급)
- ※ 신청일 기준 고용 유지자에 한해 지원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

2. 지원절차

- 신청기한: 2025.3.31.(월)
- 지원절차: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원

【 사업추진 프로세스 】



※ 既 선정된 근로자 대상(1~2), 사업운영 반복(3~5)

③ 근로환경 개선 : 10개 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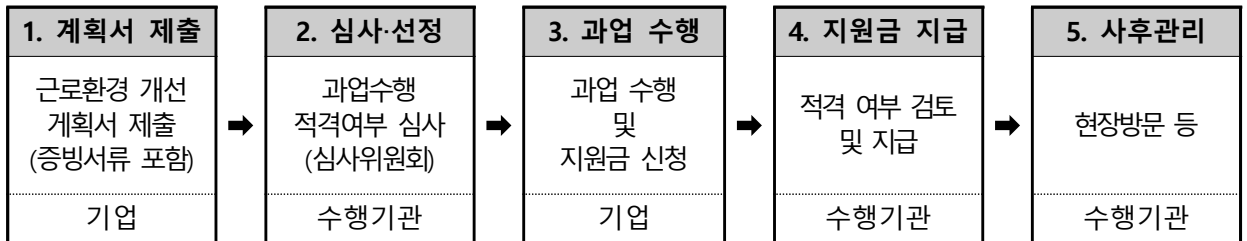
1. 지원내용

- 세부내용: 기업 도약 장려금 참여기업 및 후보기업* 재직자 복리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보수, 휴게 편의장비 구입 등 인프라 구축비 지원
※ 후보기업 : 2025년 신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지원규모: 10개 기업
- 지원기간: 사업 선정 후 ~ 2025. 10. 31.까지
- 지원수준: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 - 근로환경 개선비용 중 80%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하며, 총 비용의 20%는 기업 부담

2. 지원절차

- 신청기한: 사업 참여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
- 지원절차: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원
 - 2025년 동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개별기업에서 근로환경 개선 계획서 제출
 - 과업 수행, 완료보고서 제출 등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

【 사업추진 프로세스 】



④ 공통 :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항

1.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운영

- 일자리 채용 지원금 대상자는 본 사업에서 개설하는 **재직자 직무교육 및 간담회 운영 시 참석 必**

2. 기업탐방 운영

- 기업 도약 장려금 선정기업은 기업정보 공유 및 지역인재 발굴, 채용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탐방 운영 시 협조

III. 사업 신청 및 선정방법

① 사업 신청

1. (기업 도약 장려금)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지원대상 요건 만족 시 참여 신청서(서식1~서식5)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
 - 일자리 채용 지원금은 기업 도약 장려금 대상자와 동일하므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
2. (근로환경 개선) 계획서 작성·제출(서식 8)
 - 사업 참여기업 선정 후 별도 접수 예정(현시점 신청 필요 없음)

② 참여기업(근로자) 선정

1.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정
 - 제출한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
 - 필요에 따라 발표, 인터뷰 등 진행할 수 있음
 - 심사 기준(안) :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, 재정건전성(기업 신용등급 등), 고용유지 가능성(계속 고용 의지 등),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 가점 부여 등
2. 채용 인력(수혜근로자) 중복 검토를 통한 최종 선정
 - 선정기업 근로자 대상 중복지원 검토 등 외부기관 연계한 최종 지원 대상 확정

IV. 접수방법 및 기타사항

① 접수기간 및 방법

1. 접수기간 : 2025. 3. 18.(화) ~ 2025. 3. 31.(월) 18:00까지
2. 제출서류 : 참여 신청서(양식) 외 증빙서류 1부 (※ 하단 신청서류 목록 참조)
3. 접수방법 : 우편(또는 방문 접수) 후 메일 발송
 - 봉투 겉면에 ‘충남 자동차부품 제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신청서’ 표기
 - 제출서류 스캔파일(모든 서류 일체 PDF 파일로 변환) 메일 발송
 - 접수 메일 : young@ctp.or.kr
 - 메일 제목에 ‘기업명 -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서’ 표기
 - 접수 마감시간(18:00) 이후 접수는 받지 않으며,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우편 도착분까지 인정함
 -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
4. 제출처 및 문의처 : (31035)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
충남테크노파크 벤처관(8관) 3204호
산업인력개발센터 김기태 연구원(☎041-589-0663)

【 사업 참여 신청 서류 】

구분	번호	서식명	비고
사업참여 신청서	서식 1	사업 참여 신청서	첨부서류 7종
	서식 2	(기업) 개인정보 수집, 동의서	
	서식 3	(기업) 참여자격 확인 및 동의서	
	서식 4	(개인) 개인정보 수집, 동의서	
	서식 5	(개인) 참여자격 확인 및 동의서	
	서식 8	(기업) 근로환경 개선사업 계획서	공고 시점 제출 불필요

※ 추가 확인 필요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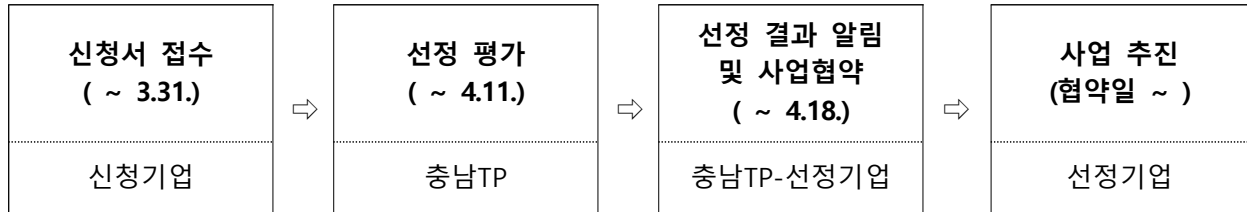
※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② 지원신청시 유의사항

1.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,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추후라도 적발시 지원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함
 -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
 -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- 기타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
2. 정부지원사업비 부당 유용, 환수 등의 이력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향후 적발 시, 사업 선정 후 지원 중에도 지원 제외 및 사업비 환수 조치함
3. 참여기업은 본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, 네트워킹(간담회, 기업탐방 등)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

4. 타 인건비 지원 사업 수혜 근로자는 신청 불가(향후 본 사업 수혜기간 동안은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불가)
5.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연락 두절 및 채용인원에 대한 지원 신청 취소, 지원 성과 관련 서류 미제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, 향후 충남테크노파크 유사 지원 사업 선정 평가 시 반영함

③ 사업 추진 절차



※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- ※ 붙임: 1. 사업참여 신청 서식-6종
2.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- C30